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청년아동과

제정 2017 · 4 · 7 조례 제1304호 일부개정 2018 · 7 · 31 조례 제1411호 일부개정 2019 · 5 · 8 조례 제1491호 (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) 일부개정 2021 · 11 · 5 조례 제176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다.
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·건 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- 제4조(아동보호 및 학대예방) ① 시장은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 수립 시 성별에 따라 다른 현실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
 - 1.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
 - 2.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, 교육에 관한 사항
 - 3.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
- 제5조(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) ①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, 복지, 보호, 교육,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

-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 - 2.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·정서 발달 교육지원
 - 3. 부모의 양육 지도
 - 4.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
- 제6조(아동복지시설 지원 등) ① 시장은 보호·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, 양육, 교육,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0조에 따라 설치·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보호·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천시 아동복지심 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 - 2.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
 - 3.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 - 4.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 - 5.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
 - 6. 삭제 〈2019·5·8〉
 - 7.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
 - 8.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
 - 9.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
 - 10. 아동보호(학대예방)를 위한 아동복지전담기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

-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(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한다)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제22조 또는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
 - 나.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 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
- 2. 「변호사법」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「의료법」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4.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
- 5. 「국가공무원법」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6. 아동복지학,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7.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[전문개정 2021·11·5]
- 제9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
- 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 - 1.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
 - 2. 질병,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
- 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2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.
 -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⑥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.
- 제13조(위원회의 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아동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- 제14조(사례결정위원회)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(이하 "사례결정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-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인 이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1·11·5]

- 제15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6조(자료제출 요구 등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17조(회의의 비공개)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- 제3조(경과조치) ① 「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.
 -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, 지역아동센터, 그룹홈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.

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
부칙〈2018 • 7 • 31 조례 제1411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9·5·8 조례 제1491호,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- ②「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.
- ③ 생략

부칙〈2021·11·5 조례 제1761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